

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83
----------	-----

제안연월일 : 2012. 2. 7.

제안자 : 김순점 의원 외 6명

1. 제정이유

-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정신을 고취시켜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 아울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을 활성화시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 적극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을 위한 기본방향, 교육·홍보, 재원과 운용, 분석·평가 등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 계획수립 추진(안 제4조, 제5조)
- 라.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등(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 마. 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 창구 및 동 주민센터에 접수창구 설치(안 제11조)
- 바. 보건소 진료비 및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안 제12조)
- 사. 다른 조례(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부칙 안 제2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련법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 장기기증 등록자의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기증등록자”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 등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4.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5.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기증 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울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그 연도의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에 대하여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의 범 구민장려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와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2. 구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
3. 헌혈 및 장기기증 기관·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구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5. 장기기증자이거나 장기기증 등록자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보건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장기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장기기증 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및 지소의 진료비 면제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②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4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기기증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로서증을 소유한 자는 당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883)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안 연 월 일 : 2012. 02. 07(화)
- 나. 제안 자 : 김순점 의원의외 6명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2. 02. 13(월)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2. 02. 22(수)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김순점 의원)

- 가.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정신을 고취시켜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 나. 아울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 장기기증등록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을 활성화시켜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함

4. 주요내용

- 가.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 적극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을 위한 기본방향, 교육·홍보, 자원과 운용, 분석·평가 등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 계획수립 추진(안 제4조, 제5조)
- 라.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등(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 마. 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 창구 및 동 주민센터에 접수창구 설치(안 제11조)
- 바. 보건소 진료비 및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안 제12조)
- 사. 다른 조례(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부칙 안 제2조)

5. 관련법규 : 「혈액관리법」 제4조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6. 검토의견

○ 조례제정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순점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헌혈 및 장기기증 정신을 고취시켜 헌혈 수급안정을 기하고, 새 생명의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기증 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의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주요 내용

-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범 구민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규정과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및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예우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음.

○ 결 론

-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응급수혈이 필요하며, 뇌사자 또는 사망자 등의 신체일부의 장기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새 생명을 나눔으로 사랑의 운동을 확산하고 건강증진을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인 만큼 원안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